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사업의 현안 및 정책방안

주인중* · 조정윤* · 임경범**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진로·자격실 연구위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진로·자격실 연구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사업의 현안 및 정책방안

《요 약》

- 교육과학기술부는 2002년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을 토대로 한 교육훈련과정 개발뿐만 아니라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자격 출제 기준과의 내용적인 연계를 통해 산업 현장의 요구를 통합적으로 반영한 인적 자원 양성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관계당사자의 이해 부족과 각 부처 간 협력 체계 미흡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어려웠으며, 동 사업의 바람직한 정착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이 미진하였음.
- 이에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실, '10.5)를 통해 사업 효율화와 관계부처 및 기관의 수행 사업 역할을 설정하고 사업의 효율적·안정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 이 국가정책조정회의의 결정사항은 동 사업에서 이해당사자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로 사업 추진을 위한 현안 및 쟁점사항이 여전히 존재함.
- 이에 본고에서는 상기의 총리실 조정결과에 따른 현안과 필요한 후속조치를 살펴보고 동 사업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사업의 현안 및 정책방안

I.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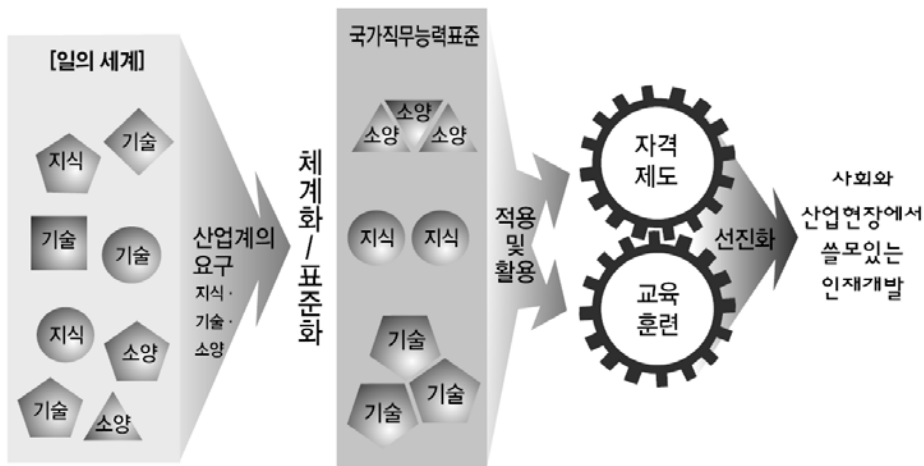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도입 배경

- 산업현장과 교육훈련과정·자격검정 기준의 불일치로 교육훈련 수요자(기업·학생)의 불만이 야기되고 자격의 통용성이 저조함.
-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의 능력을 습득하는 교육훈련과 그 습득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자격 운영 방안 모색이 시급함.
 - ※ ‘기업-대학간 지식이전 정도’와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정도’에 대한 2008년 국가간 비교에서 한국은 55개 국가 중 각각 41위로 나타남(IMD, www.worldcompetitiveness.com).
 - ※ 사내자격 취득자가 국가자격의 취득자 보다 직무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국가자격 취득자 활용증진 방안).
- “교육훈련 따로 자격 따로”로 인한 능력개발 중복투자 문제 및 다양한 학습경험(경력 등)을 능력으로 인정하는 시스템 미흡
- 특히, 수요자인 산업계가 인적자원 개발체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 인적개발체제를 혁신하는 핵심 인프라 기능 수행이 필요함.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념

- 산업현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능력을 산업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협의체(SHRDC) 또는 대표기구가 개발하고 국가가 인증·고시
 - ※ 근거법률: 자격기본법 제2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정의), 제5조(국가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의무)

- 동 표준을 교육·훈련과정과 자격기준에 활용함으로써 ‘현장-교육·훈련-자격’간 연계하여 교육투자의 효용성 획기적 제고(자격기본법 제3조, 시행령 제8조)
 - ※ 교육훈련기관: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과정 개발·운영
 - ※ 기업: 근로자의 채용, 인사배치, 경력개발 기준 등 인사관리에 활용
 - ※ 검정기관: 자격종목의 출제기준 개선



[그림 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념

■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의 목적

- 일-학습 연계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개발하여 교육훈련과정과 자격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재양성
- 궁극적으로 ‘공급자 위주’의 교육·훈련·자격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투입 중심’의 교육·훈련·자격제도를 ‘결과중심’으로 개편
- 사회·기업-교육훈련-자격제도간 긴밀한 연계 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
 - 현장성을 담보한 교육훈련과정 및 교재 개발 시스템 구축
 - 산업현장 활용을 담보한 자격 관리·운영 기반마련으로 자격제도 실효성 제고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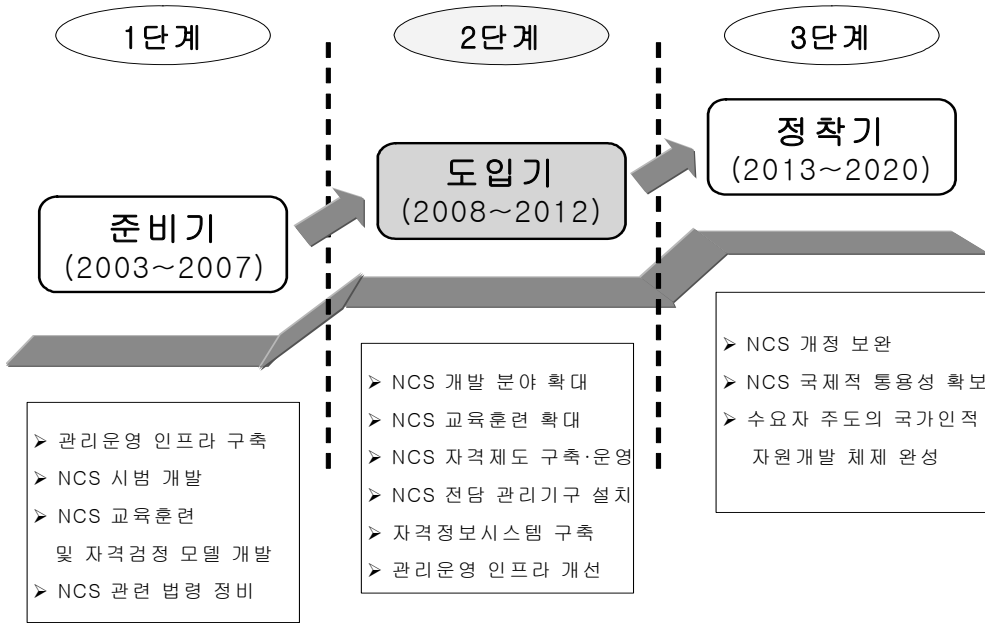
- NCS의 목적은 기업과 정부, 개인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인재 개발의 양적, 질적 균형을 이루는 것임.

〈표 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기대 효과

1	교육·훈련 및 자격의 현장 적합성 제고	직업, 직무, 그리고 고용구조 등의 변화에 자격제도가 유연하게 대처하여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개발이 가능해짐.
2	교육·훈련 이수자 및 자격취득자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향상	현장 실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길러 개인의 경력 개발에 도움을 줌으로써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킴.
3	교육·훈련 - 자격의 연계를 통한 중복 투자 문제 해소	일-교육, 훈련-자격의 운영 관리를 일원화, 체계화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음.
4	일 중심의 평생학습 촉진	자격검정이 산업현장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자격취득자에 대한 평가와 채용,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므로 근로자의 평생학습 참여를 높임.
5	자격의 국제화 촉진	직무수행능력의 체계적인 관리와 질 향상으로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여 인재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음.

▣ 사업 추진 단계

- NCS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단계별 추진 전략 하에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 현재 도입기 단계로 관계자 및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NCS 개발 및 활용 확대가 필요한 시점임.



[그림 2] NCS 준비·도입·정착 단계별 핵심 추진 사항

▣ 해외 국가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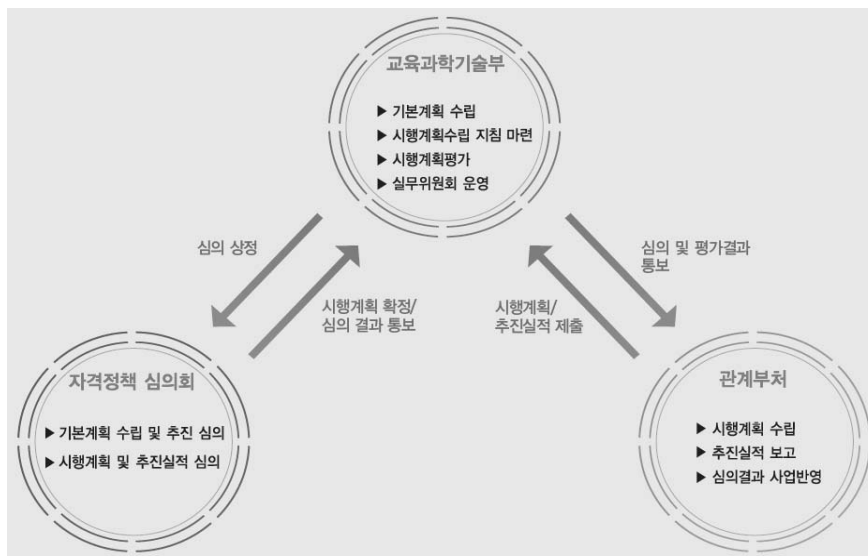
- 유럽이나 오세아니아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산업 인력의 현장 적합성 제고와 국가 간 이동 촉진을 위해 NCS와 관련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더 나아가 유럽연합은 유럽 국가 간에 통용될 수 있는 유럽자격체계(EQF: European Qualifications Framework)를 도입하고 있음.
 - 각 나라 별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국가자격체계 제도의 시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2〉 각 나라별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 시행 현황

국가명	시행 현황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S(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시켜 놓은 것으로, 중등교육 이후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활용 ▪ QCF(Qualification and Credit Framework) 직업자격 및 교육자격을 연계와 다양한 학습경험을 자격으로 인정하는 틀로 활용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S(National Occupation Standards) 산업현장의 지식 및 기술에 기반한 교육훈련과정 개발과 운영의 기준으로 활용 ▪ NQF(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NOS에 기반한 국가자격체계로 EQF와의 연동을 위해 연구 중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스콘신주 Wisconsin's Cooperative Education Skill Standards Certificate Program 숙련된 근로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학생들의 직업 선택시 참고자료로 활용 ▪ 워싱턴주 Skill Standards in Washington State School-to-work Opportunities Act 산업계와 교육계 간 협력 촉진의 근거이며, 이에 기초하여 직무능력표준 개발 ▪ 일리노이주 LOSS(Illinois Occupational Skill Standards) 다양한 직종의 직무 수행과 자격 증명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ASS(Vocational Ability Assessment Standards) 기업과 산업단체가 협력하여 사무분야의 직업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마련해 활용 ▪ NSS(National Skill Standards) in IT 미국을 벤치마킹하여 IT 분야 전문인력의 직무능력표준으로 활용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특정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을 체계화한 것으로 교육훈련과정(Training package)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 ▪ AQF(Austrailian Qualification Framework) 학교, 직업훈련기관, 고등교육 분야의 단일화된 국가자격체계로, 근로자의 평생학습 촉진과 다양한 경력 경로 개발에 기여
남아프리카 공화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QF(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교육자격을 직업자격을 연계하는 자격체계로 직무능력표준(Skill Standard)과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기본 틀로 활용

Ⅱ.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의 주요 절차

- NCS 개발 및 활용의 주요 절차는 크게 계획수립, 표준의 개발, 표준의 활용 및 적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요컨대 산업계의 요구 및 수요를 감안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NCS의 개발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산업계가 표준을 마련하게 되면 교육훈련기관, 자격검정기관 등이 이를 활용하는 구조임.**
 - 아울러, 국가는 관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NCS의 개발, 활용, 적용 등에 일관성 유지와 제도의 개선 등의 질 관리를 수행하게 됨.
 - 각각의 NCS 사업의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계획수립**
 - NCS의 개발과 활용 계획수립은 그림과 같이 정부의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의 세부계획 및 시행방안을 마련하게 됨.



[그림 3]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 수립 절차

- 교육과학기술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의 시행계획이 마련되면 이를 자격정책심의회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회회의 검토 및 확정을 거쳐 해당 부처는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게 됨.
- 각 정부부처는 구체적인 NCS 개발 및 활용 계획 수립시 부처 간 표준의 개발영역을 협의 및 설정하고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우선 개발 분야와 개발기관을 선정하게 됨.
- 또한 사업의 추진에 따라 마련된 NCS의 시안은 최종적으로 자격정책심의회회의 검토를 통해 국가적인 인증을 받게 됨.
- 인증된 NCS은 자격정보종합시스템에 탑재되어 관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게 됨.

● NCS 개발

- 각 부처의 개발계획에 따라 선정된 개발기관(산업계)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표준화된 절차, 방법, 양식에 준하여 NCS을 개발하게 됨.
- 여기서 개발기관(산업계)은 해당 산업분야의 근로자와 기업 등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기업체, 산업별·업종별 협회 및 단체,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SHRDC)를 의미함.
- 또한 NCS을 활용한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자격제도 운영을 감안하여 표준의 개발과정에서 산업계뿐만 아니라, 노동계, 교육훈련계, 관련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게 됨.

● NCS의 활용 및 적용

- 산업계가 마련한 NCS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과정 및 교재 등을 개발에 활용하고, 자격검정기관은 자격종목 개발, 출제기준 개선 등에 활용하게 됨.
- NCS을 활용한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대상 기관은 전문계고, 전문대학, 대학뿐만 아니라 실업자 및 재직자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하며, 자격의 경우에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Ⅲ.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의 추진 현황 및 성과

■ 추진경과

- '96. 2.: '5.31 교육개혁방안'에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기능 강화를 위해 자격제도 개편 추진(직업교육과 자격의 연계 강화)
- '01. 12.: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국가자격체제 도입, 부처 합의(국무조정실)
- '04. 8: 국무조정실 조정 결과를 토대로 자격기본법 개정안 국회 제출
- '07. 4: 자격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의 법적 근거 마련
 - ※ 정부는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개선하여야 함(제5조).
 - ※ 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자격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함(제6조).
- '09. 6: 표준개발 일원화를 위한 관계부처(교과부, 노동부, 국토부, 지식경제부) 및 전문가 TF 운영을 통해 표준 개발영역(대분류) 설정, 개발 양식 및 관련 용어 통일
 - 부처(교과부, 노동부, 지경부) 및 전문가 참여, 표준의 주요 구성 항목의 양식 합의
 - '09년 부처공동 NCS 개발 계획에 따른 표준 개발시 합의 양식 적용
 - 개발영역(대분류)의 경우 20개 대분류 및 대분류별 주관부처를 '09.4 자격정책심의회에서 확정함.

〈표 3〉 NCS 개발영역 및 주관부처

No	개발 영역(대분류)	주관부처
01	농림·수산	농림수산식품부
02	섬유	지식경제부
03	화학·에너지	지식경제부
04	재료	지식경제부
05	기계	지식경제부
06	전기·전자	지식경제부
07	정보통신	지식경제부
08	건설·해양	국토해양부
09	운전·운송	국토해양부
10	환경	환경부
11	금융·보험·부동산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12	경영관리(사무관리 포함)	지식경제부·노동부
13	자연과학·사회과학	교육과학기술부
14	공공보안(법률·경찰·소방·교도)	법무부, 행안부
15	교육·훈련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16	보건·의료	보건복지가족부
17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문화체육관광부
18	스포츠·관광·레크레이션	문화체육관광부
19	식품가공·조리	농림수산식품부
20	대인서비스	지식경제부·노동부

- '10. 5: 국무총리실,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한 사업 효율화 및 관계부처 및 기관의 수행 사업 역할 구분

〈 국무총리실, 국가정책조정회의(5.7) NCS 사업 효율화 내용 〉

- 명칭: (국문)국가직무능력표준, (영문)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NCS 개발 관련 역할
 - 정부주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담당: 노동부
 - 표준개발사업의 기본계획수립 및 자격정책심의회 안건 상정: 노동부 및 교과부 공동
 - 정부 발주 표준개발사업 담당: 한국산업인력공단
 - 국가직무능력표준 관련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노동부와 교과부는 올해 말까지 중장기 표준개발계획(2010~2014) 수립

▣ 주요 추진 실적('03년~'10년)

- NCS 개발 지침서, 인증제도 운영 방안, 국가자격체계 개발 및 운영 방안, 직업기초능력 영역 개발, 선행학습경험 인정 방안, 표준에 의한 자격 제도 연구 등 인프라 구축 관련 연구 수행

〈표 4〉 연차별 NCS사업 추진 실적 현황

구분	활용 인프라 구축 연구·사업	NCS개발	NCS활용·적용	비 고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영역 분류시안 개발 ○ 개발·관리·운영 방안 연구 ○ 직업기초능력 개발·운영 체계 연구 ○ 국가자격체계 관리 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지침서 개발 ○ NCS 개발(1종) *e-biz(시범개발) 	-	준비기 (2003~2007)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훈련기준, 출제기준, 직업정보 연계 분석시스템 구축 ○ 연계 분류코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지침서 개선 ○ NCS 개발(1종) *실내건축(시범개발) ○ 직무체계 개발(1종: IT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S 교육훈련과정 모형 개발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S 개발영역 분류 및 코드화 ○ NCS 사업 중간성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S 개발(1종) *반도체 소자 설계·개발·생산 ○ 직무체계 개발(2종) *정보통신,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S 교육훈련과정 시범개발 (2종: e-biz분야 전문대, 대학) ○ NCS 자격검정 방안 연구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자격체계(KQF) 수준별 배치 기준 연구(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S 개발(2종) *디스플레이 설계·개발·생산, RF회로 설계·개발·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S 교육훈련과정 시범개발 (3종: 반도체분야 전문계고, 전문대학, 대학·대학원) ○ NCS 자격출제기준 시범개발 ○ NCS 교육과정 시범운영 (2건: e-biz분야 전문대, 대학) 	

<표 계속>

구분	활용 인프라 구축 연구·사업	NCS개발	NCS활용·적용	비 고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S 관련 법령 정비 방안 연구 ◦ 자격관리운영 계획 연구 ◦ NCS 제도 시행 방안 연구 ◦ 국가자격체제(KQF) 수준별 배치 기준 및 제도시행방안 연구(Ⅱ) ◦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따른 NCS 활용방안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체계 개발(3종) *기계, 건설, 경영·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S 교육과정 시범운영 (3건: 분도체 분야 전문계고, 전문대학, 대학)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자격체제(KQF) 구축과 운영 ◦ NCS에 의한 자격제도(KVQ) 구축 ◦ NCS 적용 및 활용 연수 등 ◦ 자격정보시스템 ISP 수립 ◦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 ◦ 직업기초능력수준별 성취기준 개발 ◦ NCS 효과성 연구 ◦ 선행학습경험의 자격인정 방안 ◦ 민간자격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S 개발(9종) *건축설계, 토목설계, 조경, 지적 및 측량, 반도체 장비 제조·운영, 임베디드 시스템, 전자회로보드 설계 및 개발, 송·배전 설비 설치 및 운영, 선박 생산 설계 ◦ 직무체계 개발(5종) *섬유 및 의복, 화학, 재료, 금융·보험·부동산, 식품가공 및 조리 ◦ NCS 개발·인증 체제 구축 ◦ NCS 개발기관 지원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S 교육훈련과정 개발(6종) *건축설계: 전문계고, 전문대학, 대학 *조경: 전문계고, 전문대학, 대학 ◦ 교육훈련과정 개발 매뉴얼 구안 ◦ 교육훈련과정 인정 및 평가체제 개발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S 개발·인증 시스템 구축 ◦ 교육훈련기관 교육과정개발 연수 ◦ 자격검정기관 NCS 개발 및 활용 연수 ◦ NCS에 의한 교육훈련과정 운영 ◦ 자격정보종합시스템 구축 ◦ 자격정책 포럼 ◦ 자격 국제화 방안 ◦ 직업기초능력 교수학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 NCS 개발 연수 및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S 개발(교과부-7종) *선체 건조, 전기기기, 공업 계측 제어, 웹 개발, 모바일 콘텐츠 프로그래밍, 세무, 예산·자금관리 ◦ 직무체계 개발(3종) *문화·예술, 농림·수산, 스포츠·관광·레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S 교육훈련과정 운영(2건) *연차별 운영계획 수립 ('09-'12) *학과단위 운영 *조경분야: 전문계고, 전문대학 	도입기 (2008~2012)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개발 절차 정비 ◦ NCS 개발 및 활용 계획 ◦ 전문계고 직업기초능력 연구학교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수정·보완(10종) *자동차정비, 건축설계, 토목설계, 송배전 등 ◦ 직무체계 개발(3종) *해양, 운전·운송, 보건·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S 교육훈련과정 운영(2건), <계속> *연차별 운영계획 수립 ('09-'12) *학과단위 운영 *조경분야: 전문계고, 전문대학 ◦ 교육과정 개발 *자동차 정비분야: 전문대학 	

▣ 성과

- '03년부터 산업분야별 직무체계 및 표준 시범개발을 통해 본격적인 표준개발과 국가자격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준비
 - 특히, NCS 개발 메뉴얼을 마련('03~'04)하여 정부부처 및 산업별 협회, 단체 등이 독자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 각 부처와 민간단체 등이 NCS를 개발한 사항을 인증할 수 있는 기준(안) 마련('05)
 - '일(직무)-학습(교육과정)' 간 연계를 위해 NCS를 기반으로 교육훈련과정 및 교재를 개발하고, 시범 적용
- NCS 개발 메뉴얼 일원화를 위한 TFT 운영('09.1~8)
 - 부처(교과부, 국토부, 노동부, 지경부)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표준의 개발시 적용할 통일된 양식 마련(직무능력명세서 중심)
 - NCS 개발영역 20개에 대한 주관부처 설정
- NCS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산업계, 자격검정기관, 교육훈련기관, 정부부처)의 이해 증진과 협력을 위한 대상자별 설명회, 워크샵, 연수 개최('08~'09)
 - NCS에 기반한 직업기초능력 수준별 성취기준, 교육과정, 교재 개발('08~'09)
- NCS 개발 및 인증관리와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인증관리에 대한 온라인 도구(자격정보종합시스템, www.kssnet.or.kr)를 구축·제공하여 관계자의 편의성 도모

▣ 한계

- NCS 개발 사업 추진 미흡
 - 개발 및 관리 체계에 대한 부처 간 이해와 협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함에 기인
 - 체계적인 개발·관리 방안 및 주체가 수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민간의 자발적 NCS 개발을 유도할 경우 난개발 우려가 있음.

- NCS의 각 급 학교 및 교육훈련기관 파급 속도 저하
 - 교육훈련과정 적용에 필요한 NCS 개발 및 보급이 충분하지 못함에 기인

- SHRDC 위상 및 역할 미흡
 - SHRDC 총연합회 미구축에 따라 SHRDC의 역할 및 위상 강화 기회를 만들지 못함.
 - SHRDC에 대한 정부부처 지원 미흡(산업계 지원 부재)

-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기준 등의 개발에 NCS 활용한 실적 미흡
 - 당초 도입한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확대 필요
 - 활용성 확대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NCS 개발이 부족

- 실무 총괄 및 조정기관 미지정에 따른 관련 사업 추진 미진(질관리 시스템 미구축)

-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NCS 사업의 추진방안과 정부부처의 역할을 구체화 하였으나, 세부 추진 방안(Action Plan) 마련은 다소 미흡
 - 교과부, 노동부, 지경부의 협의를 통해 20개 개발영역(대분류)을 도출하였으나, 중분류의 합의 미흡
 - '09년 표준개발 양식의 일원화를 통해 직무능력명세서 중심의 개발 양식이 합의되었으나, 직업 기초능력, 자격, 교육훈련과정 등의 활용부문의 개발 지침은 일원화되지 못함.

- KQF의 본격 시행을 위한 관계기관의 이해와 준비 부족
 - KQF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추진 방안 미흡
 - ※ KQF에 대한 세부 운영절차 및 담당기관에 대한 세부계획 부족
 - ※ KQF에 기초한 학점 이전 시스템(credit transfer system) 등 후속 사업 추진 미흡

- 총리실, 국가정책조정회의('10.5.7) NCS 사업 효율화 결정에 따라 관계부처 및 기관 간 역할의 기본 방향만 수립되었을 뿐 실무적 관점에서 현안 및 쟁점사항이 여전히 존재함.
 - 특히, 표준과 표준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인증을 포함한 질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 및 주체 설정이 동 사업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하여 반드시 논의되어야 함.
 - ※ 본 고에서는 상기 총리실 조정에 따른 현안 및 쟁점사항 중심으로 추진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함.

IV.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의 현안 및 정책 방안

▣ 국무총리실 조정결과 중심의 주요 현안과 방안

가. 표준시안의 심사(검토) 주체 선정 필요

- (필요성)정부발주의 표준 개발의 경우에도 사실상 민간(SC, 산업별·업종별 직능단체)이 개발하는 것으로 개발과정 및 결과의 타당성과 현장성 확보 여부 등 질관리 차원에서 필요성이 매우 큼(근거: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4조 2항).
 - 특히 심사(검토)의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 관점에서 ‘개발’과 ‘개발결과에 대한 심사(검토)’ 주체는 분리되어야 함.
 - ※ '09년 표준 개발시 표준시안 검토 절차는 개발기관에게 사업 추진의 부담이 되었으나, 표준의 질 제고 측면에서 작간접적 질 관리 도구로 작용함.
- (현안 및 문제점)자격기본법상 표준시안 검토는 소관부처의 선택 사항으로 필요성이 크에도 추진 주체, 근거가 불명확하여 검토의 일관성 저해 가능성 높음.
 - 기본법에 따라 부처 자율적으로 검토를 추진할 경우 ‘검토절차’, ‘기준’의 통일성을 갖추기 어려운 구조임.
 - 표준시안 검토의 필요성, 절차의 타당성 확보 측면에서 정부발주로 마련된 표준 시안에 대한 검토 생략 또는 표준개발 담당기관 검토 실시는 매우 불합리
- (방안) 인증을 위한 표준시안 검토 필요성 및 추진 표명, 추진 주체 설정
 - ① NCS 질관리를 위해 개발과 검토의 분리 차원: 전문기관 지정
 - ‘시행령 제4조 2항’의 소관부처가 표준시안 검토를 추진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함을 근거로 교과부가 동 검토 과정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임.
 - '09년 시행된 검토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여 적용(예: 정부발주의 경우 약식)
 - ② 부처 및 기관의 의견 대립 해소 차원: 자격정책심의회 소위원회 담당

나. 자격정보종합시스템 운영 주체 및 단일 시스템 선정 필요

- (필요성) 자격 및 NCS 관련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표준개발 과정상의 질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이해 당사자 의견수렴과 온라인 표준시안 검토(인증)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 탑재·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필요
 - ‘자격기본법 제6조 1항 및 2항’에 의거 자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확정된 NCS를 자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게 되어 있으므로 단일 시스템 및 운영주체 설정 필요
- (현안 및 문제점)교과부는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위탁: 직능원)하고 있으나, 자격기본법상 운영 주체가 모호하여 개발 담당기관(공단)이 기 구축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현 NCS-NET의 본래의 목적과 기능 상실될 가능성이 있음.
 - 자격기본법 제10조 1항에 ‘정부는 자격취득 및 자격과 관련 …중략…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로 규정 사실상 각 부처마다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 따라서 NCS-NET을 동 법으로 협소(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범부처 차원이 아닌 교과부가 운영하는 자격정보시스템임.
- (방안) 시스템 개발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와 일관된 표준개발 질관리 및 인증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자격정보시스템을 지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주체 선정이 필요
 - 향후, 국가(기술)자격과 민간자격정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포털 시스템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음.

다. 표준개발 지침서(매뉴얼) 마련 및 관리 주체 선정 필요

- 표준개발 지침서는 표준 개발영역 및 분야 설정 및 선정, 표준개발, 인증, 적용, 환류 등 NCS 사업 전체 부문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며,
 - 표준 사업과 관련한 기준, 지침, 가이드 마련 차원에서 연구영역에 해당
 - 표준의 적용·활용(교육훈련과정, 자격 등)에 따른 개선 요구 및 사항을 분석하여 표준개발 절차에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적 관점에서 표준개발 지침서(매뉴얼)의 지속적 관리 필요

▣ NCS 개발 및 활용 절차에 따른 사업내용 및 수행주체(안)

- 앞서 국무총리실의 조정 결과에 따른 주요 현안(쟁점사항)을 살펴보았으며, 이는 NCS 사업의 개발·활용 관점에서 수행 주체와 근거에 따라 이해 당사자의 이해와 역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동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립자기 위한 적용 및 활용, 확대, 질관리의 연속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NCS 개발 및 활용 절차에 따라 필요한 추진 사업 내용과 수행 주체(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표 5> NCS 개발 및 활용 단계별 사업 내용 및 수행 주체(안)

단계	(필요) 사업 내용	수행 주체 (관계기관)	근거*
1. 개발 계획 수립	1) 연차별 표준개발계획 수립(2010-2014)	교과부, 노동부, 각 부처	국가정책조정회의(5.7), 법 제5조
	2) 이행 및 실적 분석	"	"
2. 개발	1) NCS 개발 매뉴얼 마련	교과부, 노동부	-
	2) NCS 개발 지원 및 안내	노동부	국가정책조정회의(5.7)
	3) NCS 개발(시안 마련)	노동부, SC	국가정책조정회의(5.7), 시행령 제4조 1항
3. 인증	1) NCS시안 검토	교과부, 소관부처	시행령 제4조 2항
	2) NCS시안 인증	자격정책심의회	법 제6조 1항
	3) 인증된 NCS 고시	교과부, 소관부처	법 제6조 2항
	4) 인증된 NCS의 자격정보시스템 탑재	교과부, 소관부처	
	5) 전체 과정 및 이행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	-
4. 적용 및 활용	1) 교육·훈련 적용	교과부, 노동부, 소관 부처 등	법 제3조, 제4조, 시행령 제8조
	2) 자격제도 적용		
	3) 근로자 인사관리 등		
	4) 적용 및 활용 현황 및 적절성 조사분석	"	"

<표 계속>

단계	(필요) 사업 내용	수행 주체 (관계기관)	근거*
5. 개선·폐지 및 재인증	1) NCS 수정, 보완, 폐지 필요 여부 조사연구	교과부, 소관부처	시행령 제7조
	2) NCS 개선·폐지 계획수립	교과부, 노동부, 소관부처	
	3) NCS 수정, 보완	SC	
	4) 재인증 과정에 대한 조사분석	교과부, 소관부처	
	5) 재인증을 위한 검토 및 재인증	교과부, 소관부처, 자격정책심의회	
6. 기타	1) NCS 사업 관련 인프라 구축 연구	교과부, 노동부	국가정책조정회의(5.7), 법 제6조, 시행령 제4조, 제6조 제7조, 9조 등
	2) NCS 사업 관련 질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연구		

▣ NCS의 적용 및 활용의 질관리를 위한 추진 과제

- 자격기본법에는 표준에 의한 교육훈련과 자격의 개발과 함께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질관리 체계를 수행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계 조항은 크게 ① NCS 사업의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② NCS의 질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 사업은 다음과 같음.

① NCS 사업의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

- NCS의 현장 부합 여부 확인, 개선, 폐지 검토 및 분석
(자격기본법(이하 생략) 시행령 제7조 1, 2, 3항)
- NCS에 부합하는 자격체제 연구 및 구축(KQF, 교육훈련-자격 연계 등)
(법 제6조 1항, 시행령 제9조 1항~5항)
-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시행령 제21조)
- NCS 적용과 확대에 필요한 각종 매뉴얼 및 기준 마련
- NCS의 확대와 활용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

② NCS의 질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

- 인증을 위한 NCS시안 검토(시행령 제4조 2항)
 - 인증 심의·확정된 NCS의 자격정보시스템 등재 및 관리
(시행령 제6조 1항, 2항)
 - NCS의 활용측면에서 교육훈련과정과의 부합도 지도, 점검, 평가
(시행령 제8조 1항, 2항)
 - NCS에 부합하는 국가자격 출제기준 검토 및 민간자격 공인기준 개발
(시행령 제8조 3항)
 - 근로자 경력개발 등의 방안 마련(시행령 제8조 4항)
 - 자격정책심의위원회(실무위원회 포함) 지원을 위한 NCS 관련 조사·연구(시행령 제16조 1항)
-

참고문헌

- 김덕기 · 이동임 · 주인중 외(2008).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자격체제 구축(2008):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 인증 체제 구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나현미 외(2008). 『국가자격체제[KQF] 정보종합시스템 시범 구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종성 · 김덕기 · 김상진 외(2008).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자격체제 구축(2008):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지침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동임 · 김현수 · 김환식(2008).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자격체제 구축(2008): 국가자격체제(KQF) 구축과 운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주인중 · 김덕기 · 박종성 외(2008).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자격체제 구축(2008):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기관 지원 및 관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ANTA(2001). Implementing Training Packages through Institution ally Based Learning - A Guide for Registered Training Organisations.
- ANTA(2002). Guidelines for Course Developers.